

『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 권한의 사무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(안 제1조)
-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(안 제2조)
-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(안 별표 1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시장 권한의 사무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